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동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19 - 36

발의연월일: 2019. 5. .

발 의 자: 최동철, 정정희, 김성한
박주선, 송순효, 황영호
신낙형, 김현희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유사기능 위원회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통·폐합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임을 명시(안 제1조)

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을 통합 운영(안 제2조)

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명시(안 제3조)

라. 위원의 위촉해제 신설(안 제5조의1)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건강증진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기 타

1) 입법예고(2019. 6. 3. ~ 6. 10.): 의견 없음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붙임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생활실천 협의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 및 구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20인”을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5. 관계 공무원
6.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제4조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 만료 전 결원이 생겨 그 후임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하고, 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한다.

제5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한다.

제6조제2항 중 “정기회의와”를 “정례회의와”로 하고, “정기회의는 년2회”를 “정례회의는 연1회”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필요에 따라”로 하고, 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9조 중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0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단서 중 “관련하여”를 “관련되어”로 한다.

제11조 중 “사항외”를 “사항 외”로 하고,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제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제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조,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

	가에 관한 사항
3.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
5. <신 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 및 구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구민, 보건의료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구성) ①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5. 관계 공무원

	6.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 만료 전 결원이 생겨 그 후임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사무---------. ②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5조의1(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년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생 략)	제6조(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정례회의와 ---------- 정례회의는 연1회 ---------- 필요에 따라 ----------.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제7조(간사) ----------1명을 ----------.
제8조 (생 략)	제8조 (현행과 같음)
제9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공청회 등 개최) ------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수당 등) ---------- 범위----------. ---------- 관련되어----------.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세칙) ---------- 사항 외---------- 필요----------.

【관 계 법 령】

□ 지역보건법

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①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이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이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를 말한다. 이 경우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가 2명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1)부시장이나 행정(1)부지사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건강증진법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